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91

발의연월일: 2021. 3. 15.

발 의 자: 천준호·강민정·강은미

강준현 • 고민정 • 고영인

김교흥 · 김민기 · 김민석

김수흥 · 김승원 · 김영배

김원이 · 남인순 · 류호정

박 정•박주민•배진교

송영길 · 송재호 · 신정훈

신현영 · 심상정 · 양향자

용혜인 • 유정주 • 윤건영

유재갑 • 이병훈 • 이수진

이용선 · 이용우 · 이은주

이탄희 · 임호선 · 장경태

장혜영 • 진선미 • 최혜영

허 영 의원(4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, 고령자 등의 승·하차가 용이한 버스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시내버스의 42%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게 되어있음.

그러나 2019년 전국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이 26.5%에 불과하고, 53.9%를 도입한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30% 미만의 보급 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,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(2022년~2026년)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·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·고령자·임산부·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4조제7항).

법률 제 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대폐차할 때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	제14조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
	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
	8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
	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
	차를 대폐차할 때에는 저상버
	스로 도입하여야 한다.